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0가단5137036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진규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민경

변론 종결2022. 4. 7.

판결 선고2022.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3,76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2.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분의 1은 피고가, 8분의 7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1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C 광고전용노래방반주기 73대를 인도하라. 만약 위 물품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120,45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유무선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개발, 콘텐츠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반주기 및 음향기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E와 피고 사이의 렌탈 노래반주기 관리 약정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일자불상경부터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와 협력하여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노래방 업소에 노래반주기를 대여하게 하고 그 대여의 대가인 렌탈료는 E가 부담하는 대신 노래방 기기의 화면에 광고를 표출시키는 G라는 명칭의 광고매체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위 노래방 업소에 대여하여 설치된 C 광고전용 노래반주기에 상업광고가 표출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노래반주기의 공급과 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그 대신 피고에게 매월 온라인 신곡 인증을 위한 토큰을 지급하고 반주기 1대당 신곡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렌탈 노래반주기 관리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E의 영업 양도·양수

1) E는 2014. 7. 31. 원고와 사이에 E가 주식회사 F와 진행하여온 위 G 광고매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관련 콘텐츠 등에 관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가 부담하던 노래방업소 운영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노래반주기 렌탈료 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래반주기 관리 약정

1) 원고는 2014. 8. 6. 전항의 영업 양수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양도인인 E가 피고와 체결했던 나.항의 렌탈 노래반주기 관리 약정을 기초로 하면서도 계약기간을 2014. 7. 13.부터 3년간이 아니라 2014. 8. 6.부터 3년간으로 하고, 관리 업무의 수행 대가로 노래반주기 1대당 지급하는 수당을 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등 수정과 변경을 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주기 관리 약정(이하 '이 사건 반주기 관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반주기 관리약정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반주기 관리자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계약서 제3조에 명기한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공급과 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하는 업소에 '갑'이 본 계약의 물품을 대여 공급함에 있어 대여 계약기간 중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필요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성립]

'을'이 관리하는 업소에 제3조에 명기된 물품을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물품 범위]

본 계약의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품목 : 광고전용 노래반주기

②품명 : C

제4조 [설치장소]

1. 본 계약의 물품 설치 장소 및 수량은 별첨하여 본 계약 후 첨부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별첨된 설치 장소 및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업소 영업 상황 변동시 을은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영업상황이라 함은 영업정지, 취소 등 해당 업소의 영리 행위의 변동이 있을 시를 말한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총3년(36개월)으로 '을'이 관리하는 업소에 갑의 물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별도의 의사를 표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6조 [업소 관리권의 보장]

'갑'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업소의 관리권한을 '을'에게 보장한다. 단, 업소주의 재량권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곡인증 및 관리비]

갑은 물품의 광고표출 및 매월 신곡 업데이트를 위하여 을에게 온라인 신곡 인증용 토큰을 제공한다.

제8조(물품의 관리 및 수당 지급)

1. 을은 제7조의 신곡인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온라인 연결을 의무화하며, 만약 온라인 연결이 안 된 업소의 경우 매월 1일 전후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신곡 및 광고 영상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관리 업무의 수행 대가로 물품의 한 대당 9,000원(부가세 별도)의 수당을 을에게 매월 말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25일 이전 갑에 제출한다.

제9조 [광고표출의무]

'을'은 해당물품에서 표출되는 '갑'의 상업광고를 업소 영업시간 중 표출토록 반주기 설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의 설치 운영되는 개별 룸에 고객 입장시 물품의 전원을 'ON' 상태로 켜두어 '갑'의 상업광고가 반주기 대기모드에서도 상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 [물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② '을'이 관리하는 업소의 이전, 명의 변경 및 매매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 또는 이관하거나 제품의 설치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A/S 및 관리의무]

계약기간 중 기기 결함 또는 품질 사유 및 사용자 과실 등으로 발생한 일반적인 A/S는 '을'의 책임아래 신속히 처리한다.

제13조 [기존 구형반주기]

1. '갑'은 렌탈반주기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업소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구형반주기를 회수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설치비를 '을'이 관리하는 업소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을'은 업주 개인사정 또는 제10조에 따른 광고표출의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계약종결 시 업주에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구형반주기를 원상복구하여 '을'과 '을'의 관리업소 사이의 분쟁에 '갑'이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약조한다.

2014. 8. 6.

2) 원고는 2014. 8.부터 2016. 8.까지 25개월간 매월 피고에게 노래반주기 261대에 관한 신곡관리비 합계 64,597,500원, 2014. 8.부터 2017. 1.까지 30개월간 합계 77,517,000원 상당의 신곡인증용 토큰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반주기 관리약정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청구소송과 판결

피고는 2017. 5. 10. 원고를 상대로 2016. 9.부터 신곡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7. 7. 31.까지의 용역비 27,234,900원, 2017. 2.부터 신곡인증용 토큰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7. 7. 31.까지 15,183,000원과 미지급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8나205887)은 2019. 11. 29. 피고가 청구한 용역비 중 H, I, J, K 등의 대상업소를 제외한 2016. 9. 이후의 피고의 관리가 입증된 업소에 대한 용역비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다만, 원고가 2016. 9. 이전에 지급한 신곡관리비 및 2017. 2. 이전에 지급한 신곡인증용 토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관리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와 이를 전제로 한 상계의 주장에 대하여는 I에 관하여 주장한 2016. 6.부터 2016. 8.까지 3개월간의 신곡관리비와 2016. 6.부터 2017. 1.까지 8개월간의 토큰 수취에 관해서만 위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18,839.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원심 일부취소 판결(이하 '관련 선행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관련 선행사건 판결에서는 H, I, J, K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계산착오로 이들 업소 중 일부인 I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의 상계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H, J, K의 2014. 8.부터 2016. 8.까지의 25개월 동안의 관리용역비와 2014. 8.부터 2017. 1.까지 30개월 동안의 신곡인증용 토큰비 상당액도 업소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가 반주기의 설치, 회수와 관련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변경 사실을 반드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히 J의 경우에는 2015. 9. 3. 자진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아서 원고는 반주기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대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I의 경우에도 원고의 상계주장으로 상계가 인정된 기간(2016. 6.부터 2017. 1.까지) 이외에 2014. 8.부터 2016. 5.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용역비와 신곡인증용 토큰비 상당액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용역비 부당이득의 총액은 아래와 같이 38,115,000원이다.

H	5	2014. 8.~2016. 8. (25개월)	2014. 8.~2017. 1. (30개월)	1,237,500	1,485,000	2,722,500
I	15	2014. 8.~2016. 5. (22개월)	2014. 8.~2017. 1. (30개월)	3,267,000	3,267,000	6,534,000
J	27	2014. 8.~2016. 8. (25개월)	2014. 8.~2017. 1. (30개월)	6,682,500	8,019,000	14,701,500
K	26	2014. 8.~2016. 8. (25개월)	2014. 8.~2017. 1. (30개월)	6,435,000	7,722,000	14,157,000
	17,622,000	20,493,000	38,115,000			

나. 판단

갑23 내지 27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상 업소의 대상 관리 기간 중에 사업자 변경 등과 관련하여, ① H는 사업장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2017. 11. 20.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졌고, ② I는 사업장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2015. 6. 9.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③ J는 사업장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2015. 1. 13.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졌다가 2015. 9. 3. 자진 폐업하였으며, ④ K는 사업장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2015. 8. 26.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위 각 업소의 사업자 변경 등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먼저 ③ J의 경우를 살피면 이 업소는 자진폐업을 하였는바 영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만 변경된 경우와는 달리 폐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래방 영업 자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③ J가 자진폐업을 한 2015. 9. 3. 이후에는 노래방 영업에 사용되는 반주기가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업무가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관리업무의 대가로서 2015. 9. 4.부터 2016. 8.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용역비와 2015. 9. 4.부터 2017. 1.까지 지급된 신곡인증용 토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③ J의 폐업 이후 기간의 관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 부재 주장 부분과 ① H, ② I, ④ K의 관리업무 부재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업소의 사업자가 계약기간 도중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관리약정 제11조 제2항은 '원고들이 관리하는 업소의 이전, 명의 변경 및 매매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 또는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관리약정의 목적과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의무는 이 사건 각 관리약정상의 부수적인 의무로 보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반주기 신곡 및 광고영상 업데이트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비와 토큰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피고가 관련 선행소송에서 위 각 업소의 관리사실을 업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관련 선행 소송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청구한 대상 기간은 2016. 9.부터이고, 신곡인증용 토큰의 지급을 청구한 대상 기간은 2017. 2.부터로서 이 사건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기간과는 겹치지 아니하여 관련 선행소송에서의 관리사실 입증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로서 삼고 있는 그 이전의 관리 기간 동안에 피고의 관리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는 아니하고, 한편 노래방 영업에서 신곡의 업데이트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위 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수행하는 신곡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광고영상도 실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피고가 위 영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반주기 관리약정상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③ 'J'의 영업과 관련하여 2015. 9. 4.부터 2016.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용역비 2,884,410원($9,000 \times 27 \times (11 + 27/31)$)과 2015. 9. 4.부터 2017.

1.까지 지급된 토큰비 4,509,351원($8,019,000/30 \times (16 + 27/31)$)의 합계

7,393,761원($2,884,410 + 4,509,351$)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6.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노래반주기 반환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래반주기 관리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광고전용 노래반주기를 대여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업소에 설치하며 계약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광고전용 노래반주기를 회수하고 업소에 설치되어 있던 구형 반주기를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광고전용 노래반주기의 소유권은 계약기간인 3년 동안 광고표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업소에 양도되나, 계약기간 동안이라도 광고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되며 피고는 반주기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업소에는 구형반주기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H, I, J, K 등 4개 업소가 업주의 사정, 설치장소의 변경, 타인에게 양도 기타의 사유로 업소의 광고표출행위가 중지되었음에도 원고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거나 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처럼 용역비와 신곡인증용 토큰을 수령하였고 반주기를 회수하여 반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주기 관리약정의 의무에 따라 피고는 광고표출의무가 중단된 위 업소에 설치되었던 합계 73대의 반주기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만약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주기 1대당 가액 1,650,000원으로 계산한 120,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반주기 관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와 업소 사이의 반주기 렌탈계약이 종료하면 반주기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8, 12내지 15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주기 관리약정에 따라서 관리를 위탁한 반주기는 주식회사 F이 제조한 C 광고전용 노래반주기로서 주식회사 F이 업소를 렌탈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대여하되, F과 협력하여 G 광고매체 사업을 수행하는 E와 그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렌탈비를 대납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렌탈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예정된 물건이며, 렌탈계약의 중도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이고, 원고가 렌탈료를 대신 납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임차인인 업소가 렌탈계약상 임대인이 아닌 원고에게 바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다른 근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반주기 관리약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원고가 진행하는 광고매체 사업을 위하여 상업광고를 업소 영업시간 중 표출토록 반주기 설정상태를 유지하고, 신곡 및 광고 영상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피고가 관리하는 업소의 이전, 명의 변경 및 매매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 또는 이관하거나 제품의 설치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지만(제11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경우에 피고가 대여의 목적물인 노래반주기를 바로 회수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함께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업소에 노래반주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업소에 설치되어 있던 구형반주기를 회수하지 않는다는 약정 부분(제13조 제1항)은 원고의 의무에 관한 것일 뿐이며, 원고가 피고의 반환의무의 근거로서 삼는 광고표출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계약 종료시에 피고가 구형반주기를 업소에 원상복구하여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렌탈반주기를 회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명시하거나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사 4개의 업소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렌탈계약의 종료시에 피고가 반주기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관리 약정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반주기 인도 청구 및 인도집행

불능시 시가 상당의 금액 청구에 관한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영일